

# 전산정보원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전산정보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)** 본 전산정보원은 가천대학교 전산정보원(이하 '전산원'이라 한다)이라 부른다.
- 제3조(소재)** 본 전산원은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와 메디컬캠퍼스 내에 둔다.  
(개정 2019.08.29.)

## 제 2 장 조직 및 운영

- 제4조(조직)** 전산원에는 글로벌캠퍼스에 정보시스템팀을 메디컬캠퍼스에 전산정보원(M)을 둔다. (개정 2019.08.29.)
- 제5조(원장)** ①전산원에 전산정보원장(이하 '원장'이라 한다) 1인을 둔다.  
②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 
③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전산원의 업무를 통할하고, 소속 직원 및 조교를 지휘·감독한다.
- 제6조(직원 및 조교)** ①전산원의 소관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직원과 조교를 둔다.  
②직원은 학교 직원으로 임명하며 조교는 조교인사규정에 따라 임용한다.
- 제7조(업무)** ①전산원은 전산에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 수립, 교수연구 협조, 행정업무 처리 및 기타 기기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(개정 2019.08.29.)
- 제8조(이용 대상)** 전산원의 이용대상자는 재학생과 교직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.
- 제9조(이용 방법)** 전산원의 기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사용신청서를

#### 4-1-5~2 제4편 부속기관

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10조(이용의 제한)** ①학내 구성원 다수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학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은 행정 및 학사 업무에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13.02.27)

②이용자는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교내 전산망에 유통 또는 게시할 수 없다. (신설 2013.02.27)

③위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 등에 의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, 전산정보원장은 직권으로 해당 이메일 삭제, 이용자의 접근제한, 전산망윤리위원회에 심의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관련자는 동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 (신설 2013.02.27.)

**제10조의 2(전산망윤리위원회)** ① 전산망 등을 통한 학내 구성원간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윤리문제 심의를 위해 기획처장 산하에 전산망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. (신설 2013.02.27.)

②전산망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5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, 총장이 위촉한다. (신설 2013.02.27.)

③전산망윤리위원회는 명예훼손, 사생활 침해 등 학내 구성원간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를 심의하여 이메일 또는 게시물 삭제, 이용자의 접근제한, 특별감사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(신설 2013.02.27.)

**제11조(이용 경비)** 전산원 이용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소정의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이용료는 재무회계팀에서 취급한다.

### 제 2 절 통제 및 보안

**제12조(통제 및 보안)** ①전산원은 전산기기 저장 자료를 가공하여 출력되는 각종 정보의 통제 및 보안유지에 필요한 세부업무절차를 수립하여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전산출력 정보를 각 부서에서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이를 통제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전산원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관리시행세칙을 따로 정한다.(신설 2016.08.30.)

### 제 3 장 재 정

**제13(재정)** 전산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충당한다.

1. 교비(자료구입비), 실습비
2. 출연금
3. 기타 수입금

제14(회계년도) 전산원의 회계년도는 가천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.

제15(운영세칙) 전산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3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6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9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